

##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 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Sangok Choi<sup>a,1</sup>, Jeongho Lee<sup>b,2</sup>

<sup>a</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of An Amro 145, Sung Bukgu, Republic of Korea

<sup>b</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of An Amro 145, Sung Bukgu, Republic of Korea

---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must be enacted in South Korea. This bill embraces several items, whose goals pursue improving the safety of citizens from disasters and emergencies, and emphasizes letting a citizen take a safety education class. Several scholars declare that a safety education leads a citizen to live in a much safer circumstance by teaching a citizen how to handle emergencies in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decision-makers consider pass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

### KEYWORDS

National Safety  
Education Law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Disaster Relief  
Safety Culture

---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재난안전교육  
안전문화

---

© 2016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sangchoi@korea.ac.kr](mailto:sangchoi@korea.ac.kr) / Tel. 82-2-3290-2284

1 Tel. 82-2-3290-2284. Email. [sangchoi@korea.ac.kr](mailto:sangchoi@korea.ac.kr)

2 Tel. 82-2-3290-1380. Email. [belief77@korea.ac.kr](mailto:belief77@korea.ac.kr)

---

### ARTICLE HISTORY

Received Mar. 20, 2016

Revised Mar. 28, 2016

Accepted Mar. 30, 2016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호우·대설 등의 자연재난과 구미불산 누출사고,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침몰 사고와 같은 인재와 관련된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의 발생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치명적인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국민, 재난관리담당자, 그리고 정책결정자 모두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에 의해 야기되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은 소중한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보호를 위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증대되어지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난안전교육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안)의 정당성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

현재 국가 재난관련 훈련에 대한 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민방위 훈련지침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지침서는 훈련 방침, 훈련 추진계획, 세부 훈련실시계획, 훈련관리 방안 및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 방침에는 해당 년도에 실시되는 재난 및 민방위 훈련에 대한 중점사항이 포함되고, 훈련추진계획에는 1년 동안 실시될 훈련의 구분, 유형, 대상, 방법, 책임기관 등을 명시한 훈련 개요와 월별 훈련계획이 작성되어 운용되고 있다(Park & Paik, 2014).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들이 존재하나, 년 단위 훈련 지침서에 의해 각각 개별로 훈련이 실시되어 재난 대응 훈련에 대한 국가 장기계획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장기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는 훈련은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으로서 자체 훈련은 원전별로 민방위의 날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년1회 이상)하며, 합동훈련은 원전소재지별로 4년에 1회를 실시하고 연합훈련은 범정부차원의 중앙지자체 연합으로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장기 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중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제 없이 수년이 지나면 지역적인 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발생의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재난대응훈련은 재난 대응체계 구성의 핵심인 역량목표와 재난시나리오 및 이를 뒷받침하는 훈련체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환류 되어야하나 훈련 간 연계성이 미약하며 훈련목표설정이 개념적 획일화되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환류 체제의 구축이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의 재난대응 훈련이 짧은 단시간에 실시되는 보여주기 식의 제한적 통제훈련으로 실행되어 훈련효과 면에서 실제적인 대응역량과 연계가 약하여 신뢰성이 제한되는 취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미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미국에서 재난안전 교육의 근거가 되는 연방정부의 법령으로는 국토안보교육법, 국토안보부법, 대통령령, 연방정부 지침 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주정부마다 재난안전 교육관련 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위한 주정부 법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교육·훈련기준을 정하여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May et al., 2011; Quarantelli, 1988; Schneider, 1995).

미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안보부 소속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관리교육원(EMI :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에서 재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chwab et al., 2007). EMI 교육과정은 FEMA 직원, FEMA 비정기 고용직원, 주·지방·자치구 직원, 재난관련 전문가, 연방정부 관계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516개의 과정(2008년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교육 참가자 5,500명의 거주자 교육과정과 주정부가 교육하는 연간 참가자 100,000명의 비거주자 교육과정, EMI가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연간 참가자 150,000명의 개인학습과정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MI는 국가차원에서의

연방, 주, 지역정부, 자원봉사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의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관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을 하고 있다. EMI의 교육 실현목표는 비전, 미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는데, EMI의 비전은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비상사태 및 재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미션은 ①국토안보부 및 FEMA 직원 역량강화, ②연방정부, 주, 지역정부의 직원 능력향상, ③교육훈련을 통한 개인, 가족 및 전문가들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에 있다. EMI의 추진전략은 ①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개발·전달, ②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자원봉사자 조직, 연방비상관리청 재난담당인력, 기타 연방기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들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교육훈련 개발, ③각각의 조직들이 모든 위협에 대해 국가대응체계(NRF), 국가위기관리시스템(NIMS), 국가대비지침과 같은 관리지침에 따라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 ④지역사회 내에서 위험 취약요소를 줄이거나 재난에 대처, ⑤기술적 위협에 관한 영역에 대한 거주민, 현장, 자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EMI의 교육과정은 지역자율방재조직 및 운영, 재해저감현장운영 등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재난 및 비상사태의 예방, 대비, 재난안전과 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기법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MI는 9.11 테러이후 재난의료, 방사능 위험물질, 대량살상무기 등의 교과목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수준의 재난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여름·겨울의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기관별, 교육내용별로 구분하여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난·위기관리 교육을 위해 학습자원센터(LRC: Learning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과정은 경감,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위기관리 4단계와 자연재해(지진, 허리케인, 홍수, 댐안전), 기술재해(유독물질, 테러리즘, 방사능누출, 화학물질 비축위기 준비), 전문개발, 리더십, 교육방법, 훈련설계 및 평가, 정보기술, 공공정보, 통합위기관리, 강사양성 등과 자격증 증명 과정, 고등교육, 온라인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EMI는 학생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각 주별 법 및 규칙 등을 제정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교육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주별, 학교별,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 방재 선진국인 미국은 일찍이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난안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정비 등 안전교육 활성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4.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2015년도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핵심과제로 “일반 국민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5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및 동령 제73조5 대국민 안전교육대상과 방법·시기)에 대국민 안전교육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주체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즉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행할 주체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국민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은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한하고 있으며, 이 법들 또한 재난안전과 소방 등의 안전이 혼재되어 있다.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3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주요 교육내용으로 학교폭력안전, 사이버 음란물 안전, 친구의 따돌림안전, 교통안전 등의 내용을 교육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의 경우 대학진학과 취업의 상태에 따라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기회가 달라지며, 특히 여성의 경우 중등교육 이후 취업을 하지 않을 시 사실상 재난안전 교육·훈련 기회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업주 또는 취업 상태의 성인의 경우 많은 개별법에서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아닌 사업장의 특성과 관련된 안전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안전교육의 대부분은 수업 또는

간단한 실습 정도의 실내교육에 한하고 있으며 실제 훈련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대국민 안전교육과 재난책임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범정부적 재난안전교육 진흥과 총괄·조정을 위한 입법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은 특정 대상 집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과내용도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재난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교육훈련의 취약시설(자)에 대한 재난안전 및 구조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5. 국민안전교육진흥법(안) 제정 제시 및 주요 내용

앞으로 제정될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은 현행 재난안전관리 법제상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이 법은 재난안전교육훈련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 법률제정 내용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간 및 재난대응기관의 재난협력, 재난안전교육훈련의 지원 및 관리강화, 재난안전교육사 양성 및 고용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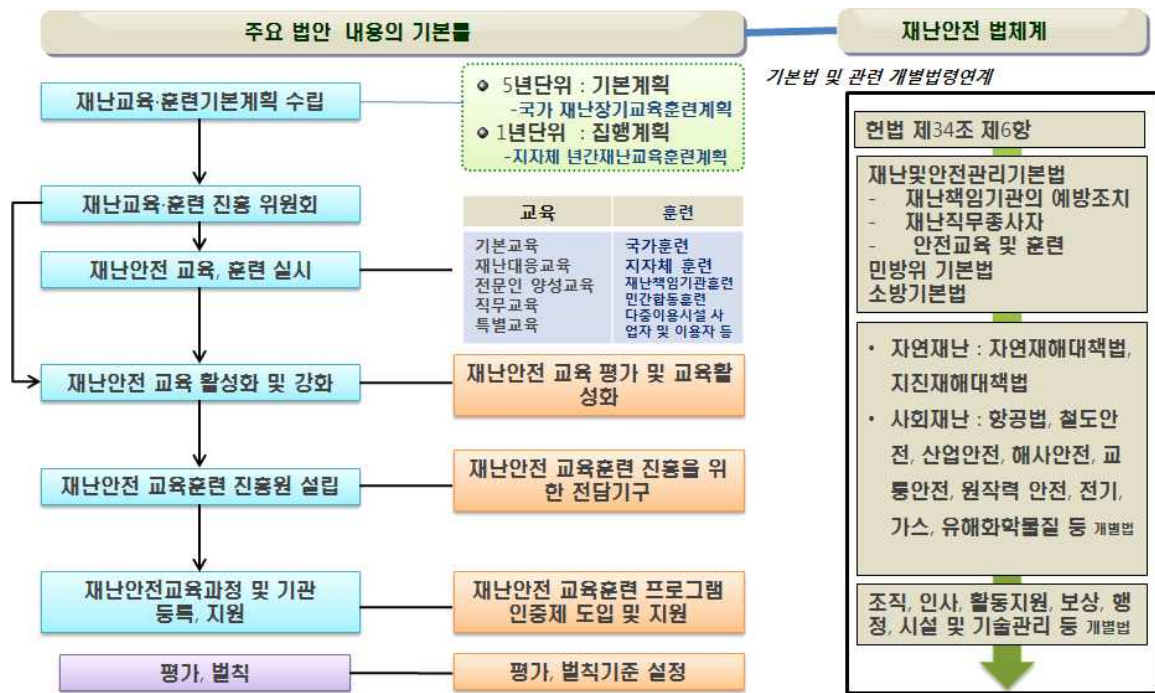


Fig. 1.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Act's Structure

#### 5.1 재난안전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 교육·훈련기본계획’은 범 부처 계획으로서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난안전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재난안전 교육·훈련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에 맞게 중기 방향과 목표, 그 구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한 액션 플랜으로 구성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대응훈련을 국가주도훈련(장기)과 지자체 주도훈련(년)으로 구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응 훈련의 균형적 실시체제를 통한 국가적 대응역량 확보 지침을 제공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2 민간 및 재난대응기관 재난협력 강화 방안

민·관 협업을 통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참여율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재난안전관리에 능통하고 효율적 대응을 하더라도 민·관·산의 협력체계보다는 효율적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안전 교육·훈련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은 민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상호 신뢰구축, 재정적 지원, 확고한 리더십, 올바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 간, 민간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조직 간의 재난안전 교육·훈련민관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총합적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Sylves & Waugh, 1996). 교육훈련의 기본원칙은 재난안전 매뉴얼을 평상시 교육과 다양한 모의훈련을 통해 숙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해야한다. 하지만 그동안 재난대비 실전훈련 부족 및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교육훈련의 실효성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재난안전 대비훈련을 민·관 협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민간의 자발적 훈련 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및 재난대응기관 재난협력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여 재난대비 훈련의 실시 등 재난대비 및 구호분야 훈련 요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재난대비 및 구호분야 훈련비용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3 재난 취약시설 안전교육의 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재해약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시설물 및 사업장 안전교육관련 교육현황 조사 결과는 다양한 생활안전 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개별 교육기관에서 비통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난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법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규정과 기준의 부재 및 재난안전관련 민간 비공인 자격증의 난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의 아동, 학생, 노인, 다문화, 임산부 등 재난안전 취약자에 대한 개별법 사항 중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없거나 생활안전 위주로 되어있으므로 재난안전 교육(지원)에 대한 기준설정과 범조항 반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심의, 평가, 인증, 등록, 개선, 폐기에 이르는 7단계의 생애주기를 법정 통제규정화함으로써 제도적인 규제의 틀 속에서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운용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재난대응능력과 생존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재난안전교육훈련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 및 공인 자격증이나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록 및 인증제 도입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able 1. Seve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Weaknesses

구 분	세부 취약성 내용
안전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종의 개별법에 의한 비 통제된 다종의 안전교육기관 운영</li> <li>· 대상시설별 전문교육위주로 균형된 대국민 안전교육 취약</li> </ul>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 안전 프로그램 운용의 비효율성</li> <li>· 전문교육 중심으로 일반국민 대상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제한</li> <li>· 생활안전의 중심으로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 미비</li> <li>·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통제대책 결여로 안전문화 정착미흡</li> </ul>
재난안전 자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의 비공인 민간자격증 난립으로 안전문화 신뢰성 취약</li> <li>· 재난안전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인증제도 미운용으로 안전문화 정착 지원</li> </ul>
안전교육 규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취약시설(자)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지침 및 기준설정미비</li> <li>· 다중이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난안전대책 취약</li> </ul>

### 5.4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 지원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 미흡하다.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약 14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재난 및 안전교육을 총괄하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수용능력은 연간 4,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

난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재난 대응요령 학습 등을 통해 자주적 재난안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기반 확충 및 제도정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국내에는 약 55개 대학에서 방재 및 안전공학, 소방, 건축 및 토목, 방재행정 등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일반 4년제 대학은 23개, 전문대학 31개, 사이버대학 1개교) 재난 안전관리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이나 축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 안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난안전 분야 학과 개설·운영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재난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사를 양성, 운영함으로써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질적 제고 및 전문성을 높여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6. 결론

각종 재난이 반복되고 점차 대형화,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비 정책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설 및 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훈련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실행할 주체와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추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훈련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개별법령에서 특정 대상이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과 재난책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부적 재난안전교육훈련 진흥 및 총괄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일부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MPSS-자연-2015-82]. 그리고 정부(국민안전처)의 정책연구(국민보호를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법 제정)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 의 일부를 발전시켜 수행한 연구임.

## References

- May, P., Jochim, A. E., & Sapotichne, J. (2011). Constructing Homeland Security: An Anemic Policy Regime. *Policy Studies Journal*, 39(2): 285-307.
- Park, N., & Paik, S. (2014).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1: On the ideas of the state of civil defense shelter & design criteri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0(3): 358-365.
- Quarantelli, E. I. (1988). Disaster Crisis Manage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5(4): 373-385.
- Schneider, S. K. (1995).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New York: M. E Sharpe, Inc.
- Schwab, A., Eschellbach, K., & Brower, D. (2007). *Haz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Sylves, R. T., & Waugh, W. I. (1996). *Disaster Management in the U.S. and Canada: The Politics, Policymaking, Administration, and Analysis of Emergency Managemen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